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태용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4년 3월로 예정된 (가칭)서울시네마테크 개관 이전에 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성공적인 시설운영으로 서울시의 영상문화 발전과 영상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영상산업 지원 시설 설치·운영과 시설의 수행 기능을 규정하고,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영상문화 발전과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